

#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213호 1999. 10. 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1999. 2. 8, 법률 제5908호)으로 주택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감리를 위하여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할 필요가 없는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사업주체”를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5(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 등)

①법 제33조의6제1항 및 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공사분야별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3조의6제2항 후단에서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③감리자는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3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감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 제34조의6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특급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특급감리원

2. 주택건설공사의 건축·토목·설비 등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⑤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2의 제목 “국가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경우의 제출도서”를 “국가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경우의 제출도서(제19조제4항관련)”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를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제19조의2제4항 및 제5항관련)”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할 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관련)

분 야	공 종	공 사 의 범 위
토 목	조 경 공 사	조경구조물공사·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휴게시설공사 · 놀이시설공사· 안내표지시설공사 및 잔디심기공사 등
	부대시설공사	담장공사· 난간공사· 방음벽공사· 적벽돌방음담장공사· 출 입문공사· 시멘트블록방음담장공사 및 낙석방지철탈공사 등
건 축	공통가설공사	가설건물공사· 가설울타리공사· 세륜시설공사· 가설전기공 사· 가설용수공사 및 가설도로공사 등
	가시설물공사	비계공사· 규준틀공사· 리프트공사 및 안전시설물설치공사 등
	가 구 공 사	신발장공사· 수납장공사 및 붙박이장공사 등
	유 리 공 사	보통유리공사· 복층유리공사· 접합유리공사 및 강화유리공 사 등
	타 일 공 사	타일공사
	돌 공 사	돌갈기공사· 석재판공사 및 테라조판붙이기 공사 등
	도 장 공 사	건물내부도장공사 및 건물외부도장공사 등
	도 배 공 사	도배공사
	주방용구공사	주방용구설치공사
	잡 공 사	수취함설치공사· 표시판설치공사 및 무전원 흡출기설치공 사 등
기계설비	위생기구공사	수전류공사· 세면기공사· 양변기공사· 소변기공사· 욕조공 사· 수건걸이공사 및 화장경공사 등